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1 1 민 사 부

판 결



사 건 2025가합40757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

원 고 1.

2.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피 고 부산광역시유도회

부산 연제구 체육공원로 43-70(거제동, 운동시설)

대표자 회장 정수범<sup>1)</sup>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변 론 종 결 2026. 3. 25.

판 결 선 고 2026. 4. 8.

1) 소장은 피고의 대표자가 '기타 회장직무대행' - 표시되어 있으나, 정수범이 2025. 7. 11.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(갑 제6호증의 3), 피고 대표자는 회장 정수범으로 표시한다.

## 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5. 4. 18.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당사자들의 지위

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로서 유도를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 향상 및 우수한 선수 양성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,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.

#### 나. 이 사건 결의 및 피고 회장 선출

은 2020. 11.경 피고의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2024. 12.경 그 임기(4년)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, 2024. 11. 30. 연임을 위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를 표명하였고, 이에 피고는 부회장 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보고하였다.

피고의 부회장 를 비롯한 13명의 이사들이 2025. 3. 31. 11개 임시이사회 개최 요구를 하였으나, 1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, 1 2025. 4. 18.경